

의안번호	제 654 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허창원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1년 3월 3일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(허창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1년 3월 3일
발 의 자 : 허창원, 박형용, 이숙애,
이상욱, 이의영, 장선배
송미애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인복지관의 업무를 규정함. (안 제3조)
- 나. 이용대상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4조)
- 다.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6조)
- 라. 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 시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)
- 마. 노인복지관 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9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-12호
- 다. 협의 :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
- 라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, 교양, 여가활동,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37조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노인복지관”이라 한다)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2(사직동)에 둔다.

제3조(업무) 노인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담 및 정보제공
2.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
3. 건강생활 지원
4. 노년 사회화 교육
5. 지역자원 개발 및 복지 연계
6.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
7. 고용 및 소득지원
8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업무

제4조(이용대상 및 사용료)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. 다만, 이용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② 강당, 교육실, 회의실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료의 감면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
3. 노인복지 관련 기관·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경우
4.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①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,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충청북도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
2. 수탁자는 수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,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3.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 등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.
4.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증·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·변경할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5.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8조(고용승계)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9조(지도·감독 등)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관한 장부·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탁계약의 해지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
2.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나게 된 때에는 사업비, 각종 시설, 자료,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익사업)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12조(자체 운영규정)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사용료 기준표 (제4조제3항 관련)

구 분	기 준	평일 사용료 (이 용 료)	비 고
강 당	주간 1회 2시간	30,000원	· 토. 일. 공휴일 및 냉·난방 시는 평일요금의 20% 가산 · 야간(18시 이후)은 주간 사용료의 20% 가산
교육실 회의실		20,000원	

관계법령 발췌

□ 노인복지법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3. 13.>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6. 7., 2018. 3. 13.>

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“수탁자“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위탁기관“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8. 11. 5., 2020. 1. 3.>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07. 3. 7., 2008. 11. 5., 2020. 1. 3.>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2. 위탁계약기간
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**
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3.>
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8조(위탁의 취소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제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
2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

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,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○ 첨부제외 사유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, 사용료 징수 및 위·수탁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정하고,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, 의안 내용에 따른 의무적·임의적 비용발생에 해당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